

양사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2010. 03. 18. 제정

2017. 03. 20. 개정

2021. 03. 17. 개정

2024. 03. 20. 개정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양사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양사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원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③ 임원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 주인을 거쳐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며,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총회 및 임시 총회개최 시 학부모 참가 및 학부모회 운영 사항 등의 사유로 회의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온라인 개최 포함)으로 개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해산)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2조(재정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회계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